

고 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-74호

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-105(2019.7.19.)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5월 1일

강 남 구 청 장**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**

가. 종 류 : 재건축정비사업

나. 명 칭 :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강남구 개포동 656-3번지(개포시영아파트 정비구역 획지③)

나. 구역면적 : 2,52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정희)

나. 주 소 : 강남구 언주로 107, 현대2차아파트 상가104호

다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0년 4월 일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(※ 향후 기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구 분		대지면적(㎡)	층 수	세대수(호)	연면적(㎡)
계		2,520	지하4층/지상10층	48세대/68호	11,759.3874
공동주택 (아파트)	소계	1,123.7572	지상3층/지상10층	48	5,243.9273
	분양	1,123.7572	지상3층/지상10층	48	5,243.9273
	소형	-	-	-	-
근린생활시설		1,396.2428	지하2층/지상2층	68	6,515.4601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공급세대수				근린생활시설 면적(㎡)
	계	34.6818㎡ (A형)	34.6818㎡ (B형)	34.6818㎡ (C형)	
계	48	32	8	8	6,515.4601
토지등소유자	-	-	-	-	5,844.2235
보류지	-	-	-	-	-
일반분양	48	32	8	8	671.2366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해당없음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1조(건축물 등의 사용·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)의 규정에 따라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약 12개월 이내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나, 그 시기는 시공자와 도급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 통지할 예정임

5. 기타 문의 사항 및 관련 도서 열람 등에 대하여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117) 및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사업 조합사무실(☎02-578-2232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끝.